

2026-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

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

학점포기제도 안내

학점포기란?

학점포기제는 기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.
(근거 : 학칙 시행세칙(1) 제6조 (재수강 및 학점포기))

신청자격

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는 **4학년 재학 중인 학생** (학업연장 재수강자 포함)
건축학부의 경우 8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5학년 재학생
※ 복수전공학생은 2학기 이상의 복수전공에서의 취득성적이 있어야 하며, (주전공 포기불가)
편입생은 2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.
※ 학사학위취득유예생 (수강신청 '유/무' 모두 포함) 은 졸업사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.

대상과목, 범위

재학 중 총 9학점 이내 신청 가능, 포털 학점포기 화면에서 신청 가능한 과목이 별도 표기됩니다.

- ① 주전공 기준 전공핵심, 전공심화 교과목과 타전공일반선택 교과목
 - ② 주전공 기준 교육과정의 개편·변경으로 인해 폐지된 전공기초(필수), 교양필수 교과목
 - ③ 교육과정의 개편·변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양교과목
- ※ 교직 및 ROTC 과목 불가 / S/U등급 및 I등급 불가 / 교환유학, 학점교류 등 외부 취득 후 인정 학점 포기 불가

신청방법

HY-in포털 > 신청 > 성적 > 학점포기신청

※ 학점포기 신청 후 결재, 포털 성적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
학점포기제도 안내

신청기간

2026-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2026.04.21(화) 09:00 ~ 04.23(목) 23:59

※ 위 기간 외의 신청/취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.

포기과목처리

학점포기한 과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- ① 이수한 학점에서 제외되며, 포기한 성적은 평점평균에서 제외됩니다.
- ② 성적증명서 표기 : 성적증명서 상 포기과목 옆에 W(withdrawal)로 표기됩니다.
- ③ 졸업우수·우등 선발 : 학점포기 전의 성적으로 우수생 및 우등생을 선발합니다.

유의사항

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으며, 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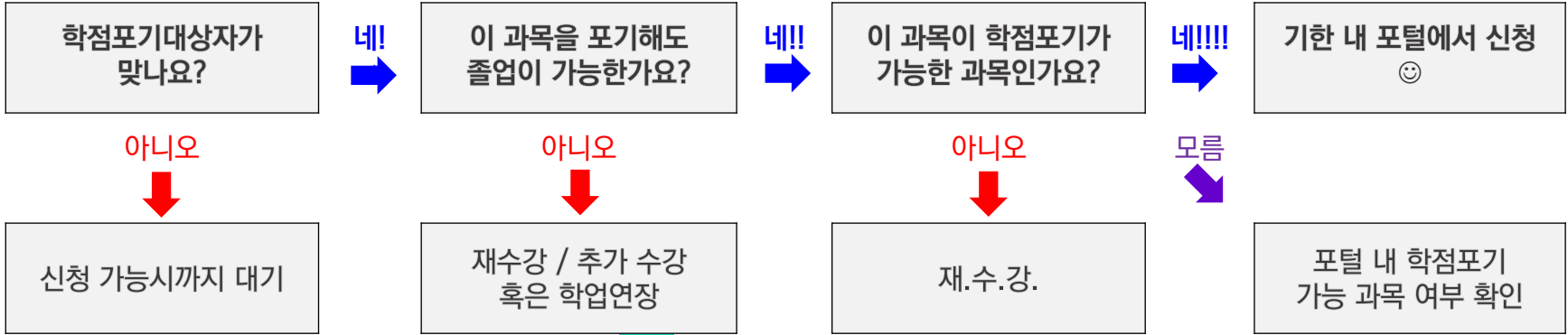
※ 전공에 따라 학점포기 시 공학교육인증(ABEEK), 건축학교육인증 등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학점포기 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비고

학점포기 가능과목은 매 학기 교과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또한 학점포기 신청을 제출하였더라도 일부 교과목(교육과정 상 포기 가능 교과목 오류, 장학에 영향이 있는 경우 등)의 경우 개별 통보 후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간략하게 살펴보는 학점포기 확인 및 FAQ



졸업사정 관련문의

- 공학인증 : 공학교육혁신센터
- 건축학인증 : 건축학부
- 일반졸업 : 학사운영팀

조기졸업 신청자의 학점포기

- 조기졸업 신청자도 학점포기를 신청이 가능하지만, 조기졸업시점의 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다음 학기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수강포기? 학점포기?

- 이번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의 취소 : 수강포기
- 이미 기존에 취득한 성적을 취소 : 학점포기